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869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주식회사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등록세 본세 249,263,830원의 부과처분 중 83,087,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9,852,760원의 부과처분 중 16,617,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등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65,562,570원의 부과처분 중 21,854,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라. 지방교육세 본세 49,852,760원의 부과처분 중 16,617,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마.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985,270원의 부과처분 중 1,661,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바.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3,112,500원의 부과처분 중 4,370,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다 내지 바항 및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9,85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매매·분양임대업, 대지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8. 4. 23.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0. 21.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redacted]센터 [redacted]호에서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redacted]빌딩 [redacted]층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10. 11. 3. 본점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redacted]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매도인	일시	매매목적물	면적(㎡)	매매대금(원)	잔금지급일
B	2008. 2. 4.	D, E	144.5	800,000,000	2008. 5. 30.
C	2008. 3. 10.		144.5	510,000,000	2008. 11. 5.
F	2008. 2. 4.	J 중 원고 사업계획지	9,071	8,212,640,000	2010. 1. 14.
G				5,444,530,000	2009. 4. 1.
H				5,475,140,120	2010. 4. 5.
I				5,475,140,120	2010. 4. 5.

라. 한편, 위와 같이 매매목적물이 된 토지들은 분필절차 등을 거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번이 변경되었다(아래 각 토지들 중 K 토지, L 토지, E 토지, M 토지, N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 당시		2012. 2. 10.		2013. 9. 26.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D	231㎡	K	121㎡	(左同)	
		L	85㎡		
		기타	25㎡		
E	58㎡	E	1㎡	(左同)	
		M	14㎡		
		O	43㎡		
J	57,098㎡	P	7,944㎡	Q	7,926㎡
		N	1,178㎡	R	1,188㎡
		기타	47,976㎡	기타	47,984㎡

마. 피고는 2012. 2. 20.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위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다.

바. 원고는 2012. 3.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마쳤다(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중 N 토지 중 매도인 F 지분에 대하여는 2012. 6. 4.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3. 2. 8. 및 2013.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2. 3. 16. 및 2012. 4. 20.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단위: 원)

지번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감면	납부세액
K, L, E, M	970,028,646	38,801,140	38,801,140	0
N	3,184,222,610	127,368,904	127,368,904	0
합계	4,154,251,256	166,170,044	166,170,044	0

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완료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협의 확정일인 2010. 12. 23.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그 중 등록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원고의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비과세였던 세액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 6. 11. 원고에게 등록세 364,679,160원, 지방교육세 67,950,530원, 취득세 121,559,700원, 농어촌특별세 10,494,19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금 564,683,5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그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단위: 원)

세목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계
취득세	83,087,940	16,617,580	21,854,180	121,559,700
농어촌특별세	8,308,790	0	2,185,400	10,494,190
등록세	**249,263,830**	**49,852,760**	**65,562,570**	**364,679,160**
지방교육세	**49,852,760**	**4,985,270**	**13,112,500**	**67,950,530**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인한 등록세 중과세에서 본점 전입과의 선후관계는 등기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법인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등록세 본세 부과처분 가운데 중과세율이 적용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방교육세 본세 부과처분 중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산출된 등록세액에 기초하여 부과된 부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는 적용 법률을 착오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 취득세 신고에는 등록세에 대한 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애당초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교육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법한 본세에 대한 부분도 각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과세율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대상으로 그 전단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이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한다)를, 후단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이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한다)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그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참조).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나 그 전제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가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의 취득일, 즉 잔금지급일이 본점 전입 이전인 경우에는 본점 전입 이후에 그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5611, 92누15628(병합)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이 본점 전입일 이전이고, 본점 전입 이후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고, 위 전단 규정에 따라 중과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점의 전입 전 부동산의 취득이 선행되었고 본점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전입 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을 적용할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바, 위 전단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정당세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2)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호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 기부채납 취득물건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이 부과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비과세 신고가 됨으로써 징수하지 못한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세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등록세가 아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법률해석을 그르쳐 납부세액을 0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의 납부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중과세율이 적용된 본세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나머지 가산세 부분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의 납부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각 중과세율이 적용된 본세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민병국

판사 박혜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5절 지방교육세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